

창원지방법원 2024. 3. 5 선고 2023가단124130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원고승계참가인 B 주식회사

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강

담당변호사 안정환

피 고 C

변 론 종 결 2024. 2. 27.

판 결 선 고 2024. 3. 5.

주 문

-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-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23. 2. 20. 접수 제756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.
-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,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원고 : 원고승계참가인을 원고로 고치는 이외에는 주문 제2항과 같다.

원고승계참가인 : 주문 제2항과 같다.

이 유

1.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

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이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피고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.

2.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청구의 표시 : 별지 ‘청구원인’ 및 ‘변경된 청구원인’ 기재와 같다.

나. 적용법조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판사 홍예연

별지